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68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이해식 · 임미애 · 송기현  
김영배 · 박상혁 · 박균택  
박희승 · 이주희 · 최혁진  
염태영 · 이기현 · 양부남  
박정현 · 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

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7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을 “대통령·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을 각각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  
-----  
-----  
-----  
-----  
-----  
-----  
-----  
-----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  
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  
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  
략)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  
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  
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  
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  
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  
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④ -----  
-----  
-----  
-----  
----- 대통령·대법원장 또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대통령·대  
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대  
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u>장</u> ----- -----.
--	--------------------------